

2023년 서부여성회관 종합감사 결과

2024. 2.

2023년 서부여성회관 종합감사 결과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2023. 11. 13. ~ 11. 17. (5일간)
- 감사범위: 2020. 6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반: 1개반 5명
- 감사중점
 - 교육훈련 운영, 교육생 및 강사 관리 적정 여부
 - 청렴 취약업무(복무, 계약, 회계등) 집행 실태
 -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 실태
 - 세외수입 부과·징수 적정 여부
 - 직점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동일 반복 지적사례 확인 등

2. 감사결과

- 처분요구 총괄

(단위: 건, 천원,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기관 경고
계	시정	주의	개선	통보	계	추징 회수	추급 환급	계	징계	훈계	
8	3	4	1	-	51	51	-	-	-	-	-

○ 처분요구 목록

(단위: 건, 천원, 건/명)

연번	분야	지적사항	관련부서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1	수강료 관리	사회교육 수강료 등 관리 업무 소홀	○○팀	주의	-	-	-	
2	수강생 관리	사회교육 수강생 우선 모집 업무 소홀	○○팀	주의	-	-	-	
3	인사	블라인드 채용 절차 소홀	○○팀	시정	-	-	-	
4	인사	강사 공개채용 절차 운영 소홀	○○팀	개선	-	-	-	
5	계약	준공검사 소홀	○○팀	시정	51 (추징)	-	-	
6	계약	하자검사 소홀	○○팀	주의	-	-	-	
7	청사 관리	공공기관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부적정	○○팀	시정	-			
8	소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소홀	○○팀	주의	-			

3. 처분요구서

※ 명세 별첨

4. 수범사례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수범사례	재능기부를 통한 수강생 역량강화와 나눔 운동 전개	
2	수범사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 나눔 서비스 운영	

[일련번호 01]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사회교육 수강료 등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에서는 인천 서부권역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 및 취·부·창업에 필요한 실기·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 세대별 요구 및 특성에 맞는 취미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해 주며

또한, 생활체육 시설 사용자가 개인 사유 등으로 사용을 취소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고 있다.

1. 사회교육 수강료 면제 확인 소홀

가. 관련법령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사회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 중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2자녀 이상 가정의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친출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발급된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는 1가정 1과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수강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나. 지적사항

여성회관에서는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수강료 면제 확인을 위하여 아이모아카드, 가족관계 확인서류, 신분증을 확인 후 면제 처리하고 증빙자료로 아이모아카드 사본(수강신청자 정보, 강의명 등 기재)을 보관하고 있다.

아이모아카드 소지자로 수강료 면제 혜택을 받은 건수는 아래 [표 1]과같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의 수강료 면제 기준이 1가정 1과목에 대하여 분기별 1회로 1가정에서 같은 분기에 다수의 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강료 면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2. 생활체육 이용료 반환 업무 소홀

가. 관련법령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인천광역시서부여성회관 체육시설 이용규정」 제15조(사용료의 반환)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때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별표 Ⅱ]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의 사용 취소 시 해결 기준, 즉 반환 금액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나. 지적사항

사용자가 프로그램 사용개시 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반환금액은 사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에서 위약금(이용료의 10%)를 공제하고 반환하며, 프로그램 사용개시 이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료에서 사용기간 일할 계산액과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하게 되어있으나

여성회관에서는 위약금 산정 시 아래[표 2]와 같이 관련 규정과 다르게 이용료(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10%로 계산하지 않고 공급가액의 10%로 계산하여 공제 후 반환해 주는 등 수강료 반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장은

[주의] ① 아이모아카드로 사회교육 수강료 면제 처리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생활체육 이용료 반환금액 산정 시 관련 규정에 맞도록 위약금 산정 및 공제 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2]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사회교육 수강생 우선 모집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에서는 사회교육 수강생 모집 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일반모집에 앞서 강좌별 모집 정원의 20% 이내에서 우선 모집하고 있다.

1. 관련법령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수강신청 등) 제2항에 따라 수강자 중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일반인에게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지적사항

그러나 서부여성회관에서는 일반모집에 앞서 강좌별 모집 정원의 20% 이내에서 우선모집을 하며 그 대상자를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수강신청 등) 제2항과 다르게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따라 수강료 면제 대상¹⁾으로 확대하여 적용하였고

특히, 일반모집에 앞서 우선 모집하는 수강생은 수강료가 면제되어 수강신청 후 수강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개강 후 취소 또는 출석률 80% 미만일 때에는 다음 기수에 우선 모집 신청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여성회관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2년 우선모집 수강생 중 강○○ 외 △명이 출석률 미달로 미수료 되었으나 다음 기수에 우선 모집으로 신청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수강생 우선 모집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장은

[주의] 사회교육 수강생 우선 모집 대상자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적용하여 선발하시고, 우선 모집으로 선발된 수강생이 개강 후 취소 또는 출석률 80% 미만일 때에는 다음 기수 우선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독립·5.18·참전·특수임무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의사상자, 국군 등록 포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등

[일련번호 03]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블라인드 채용 절차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서부여성회관 강사관리 규정」 등에 따라 사회교육, 생활체육 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를 [표 1]과같이 총 △회에 걸쳐 총 ○명을 공개 채용하였다.

인사혁신처 「공정채용 가이드북(2019)」에서는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용모 등), 학력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는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²⁾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22.11.)」 ‘Ⅱ. 공공기관

2)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블라인드 채용 적용. ①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 삭제. 1.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에서는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인적사항은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 <사진부착 포함>), 학력, 재산 등을 의미하며, 서류전형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사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7조에는 공개채용시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 중심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여성회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기간제근로자³⁾에 해당하는 사회교육, 생활체육 교육 강사 공개채용시 공고문에 [표 2]와 같이 강사 지원 신청서에 용모, 학력 및 연령(생년월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자에게 채용 예정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장은

[시정] 채용 예정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사 지원 신청서(서식)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3) 서부여성회관의 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이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8에 따른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일련번호 04]

인 천 광 역 시

개선 요구

제 목 강사 공개채용 절차 운영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강사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사회교육, 생활체육 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를 [표 1]과같이 총 △회에 걸쳐 총 ○명을 공개 채용하였다.

인사혁신처 「공정 채용 가이드북(2019)」에 따르면 채용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시험위원(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위촉시 외부 시험위원을 1/2 이상 위촉해야 하고 지원자와 제척·기피 대상에 있는 사람은 위원 위촉 시 배제토록 하고 있고, 응시 자격의 적격 여부만 평가하는 소극적 서류전형⁴⁾의 경우에도 서류전형 시험 위원은 외부 위원을 1/2 이상 위촉토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직원 등 해당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4)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만 평가, (적극적 서류전형) 관련분야 자격, 근무경력 등 정략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평가

그러나, 서부여성회관 강사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강사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서는 채용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류심사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심사위원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규정 제6조(강사심의위원회)에서는 강사 위촉 및 해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를 1/2 이상 위촉하여 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명 이하로 강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사 채용 면접 심사와 강사 해촉 심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면접 심사에 관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로인해, 서부여성회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기간제근로자⁵⁾에 해당하는 사회교육, 생활체육 교육 강사를 공개 채용하면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시 [표 2]와 같이 서류심사표에 채용의 당락을 가릴 수 있는 정성평가인 강의계획서 내용 평가(배점 20점) 항목이 있음에도 서류심사위원 위촉 없이 업무 담당자가 강사 지원 서류를 서류심사표에 따라 서면 심사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 순위를 결정하고 있고,

또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강사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면접 심사에서는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관장이 위원장으로 심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심사위원 제척·회피 안내 및 서약서 징구 없이 면접 심사를 진행하는 등 강사 채용 절차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5) 서부여성회관의 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이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8에 따른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장은

[개선] 전형별 심사위원(서류전형, 면접시험) 위촉, 심사위원 제척·회피 등 강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강사 관리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5]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준공검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 금액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는 비율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8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 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의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 일수에 산입하여 지체 일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통지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 신고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에서는 총 △건의 공사 계약을 집행하면서 [표 1]과같이 ‘○○○○ ▽▽ ○○ ◆◆ ▮▮ ♣♣ ♠♠’, ‘○○○○ ▽▽▽▽ ○○ ◆◆◆ ▮▮ ♣♣ ♠♠’, ‘○○○○ ▽▽ ○○ ◆◆(▮▮ ▮▮)’ △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 서류를 문서등록 대장에 접수하지 않고, 공사감독 담당자가 준공검사 후 준공 보고 결재 문서에 붙임으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 ▽▽▽ ○○ ◆◆◆ ▮▮’ 건은 준공 서류를 문서등록 대장에 접수하지 않았고, 준공 보고 결재 문서에도 첨부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의 준공신고서 제출일자는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계약담당자는 준공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 ▽▽▽ ○○ ◆◆◆ ▮▮’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준공기한인 20**. **. *.을 실 준공일로 기재하여 20**. **. *. 서부여성회관에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사감독 담당자는 준공기한 이후에 제출된 준공 서류에 대해서 별도의 확인 없이 20**. **. *.을 준공일로 하여 20**. **. *.에 공사 완료 보고⁶⁾를 하였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인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지체 일수를 산입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했어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계와 공사감독 담당자의 공사 완료 보고 문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 내에 준공을 완료하였다고 판단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장은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 ▽▽▽ ◎◎ ◆◆◆◆ ▮▮▮▮’ 공사 계약 건에 대하여 최종 준공검사 합격 처리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부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부여성회관-****(20**. **. *.)

[일련번호 06]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하자검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 3. 하자검사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이하 “정기하자검사”라 한다)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 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이하 “하자만료검사”라 한다)를 해야 하며, 최종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 또는 하자 검사를 위임받은 검사자는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따로 하자 만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완료 후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부여성회관에서는 총 △건의 공사 하자 검사 대상 사업 중 [표 1]과 같이 ‘●●●●● ▽▽▽ ○○○○○ ◆◆ ▮▮▮ ☼☼’ 외 △건의 사업에 대해서 하자 만료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표 2]와 같이 ‘●● ▽▽▽ ○○ ◆◆ ▮▮▮ ☼☼’ 외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 만료검사를 하자 담보 종료일 이후 실시하였다.

그리고, ‘●●● ▽ ○○ ◆◆ ▮▮▮’ 사업 외 △건에 대해서는 하자 만료 검사 완료 후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장은**

[주의] 지방계약 법령에 따른 하자 검사 이행을 철저히 시행하여 하자 보수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7]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공기관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표 1]과같이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은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감독직 직위에 있는 자 등) 제1항에 따라 “감독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 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여성회관에서는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나[표 2]와 같이 주무관을 선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장은**

[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8]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에서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표 1]과같이 △대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기기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부여성회관에서는 20**년에 [표 2]와 같이 ‘○○○○○ ▽▽ ◎ ◆◆
▣▣▣ ☼☼’를 시행하여 △대를 철거 △대를 신규 설치하고, 같은 해 엘리베이터 및 옥상 방화문 입구에 CCTV △대를 추가 설치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장은

[주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부여성회관 종합감사 수범사례

수범사례 1 재능기부를 통한 수강생 역량강화와 나눔 운동 전개

- ❖ 수강생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 지역주민 소통의 장 마련 및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

□ 개요

- 운영기간: 연중
- 운영대상: 헤어미용강좌, 도배기능사
- 내 용: 수강생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나눔 문화 마련

□ 추진실적

강좌명	대상	내 용	비고(실적)
헤어미용기능사 실전 헤어커트	지역주민	- 일시 : 월, 수, 금(14:00~17:00), 토요일 - 장소 : 서부여성회관 및 요양원 등 - 내용 : 헤어커트	- YMCA요양원 등 11건(201명) - 서부여성회관 15건(36명)
도배기능사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차상위계층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사랑家꿈” 사업 등에 참여하여 도배·장판교체 봉사 추진	- 저소득가정 도배(46가구) - 지체장애인가구 도배(29가구)

□ 기대효과

- 정기적인 실습공간을 마련하여 수강생의 역량강화를 통해 취업·창업 기회 확대
- 현장실무경험이 필요한 수강생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나눔문화 확산

□ 관련사진



헤어미용강좌 봉사활동(요양원)



도배기능사 봉사활동(저소득층)

수범사례 2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 나눔 서비스 운영

- ❖ 지역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서부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진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 ❖ 건강에 대한 관심 고취 및 질병예방을 위한 기회 제공으로 이용회원의 만족도 증대

□ 개요

- 장 소: 안내데스크 앞 로비(지하2층)
- 대 상: 이용회원 및 일반 시민
- 운영방법: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 참여기관: 서구보건소, 서구정신건강 복지센터
- 운영내용
 - 체지방 측정 및 운동·영양·혈압·혈당 검사 및 상담
 - 골밀도 검사, 혈관 나이 검사, 치매 조기 검진 등

□ 추진실적

구 분	2023년 1회차	2023년 2회차	2023년 3회차
체지방 측정, 혈압·혈당 등 건강상담	29	58	36
스트레스 측정 등 심리지원 상담	14	13	-
합 계	43	71	36

□ 기대효과

- 시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회 제공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부여성회관 홍보 및 수강생 모집에 기여

□ 관련사진



서구보건소 건강검진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 상담